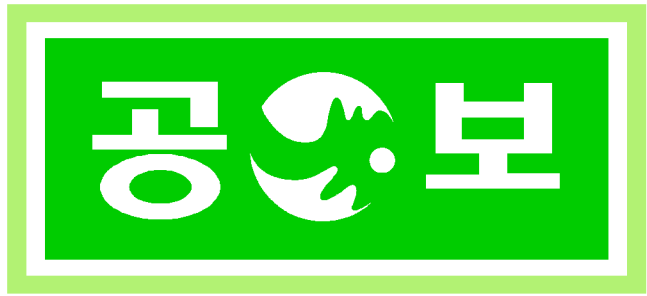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람	기 관 의 장

제 1063 호 2017. 4. 27.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80호[도로명주소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8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82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537호[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54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 8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달곡1길 15(무룡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4.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삼평동 122 무룡동 701-16외 1필지 (무룡동707-17)	울산광역시 북구 삼평동 122 무룡동 701-16외 1필지 (무룡동707-17)	2017-04-27	예전 지명인 밀곡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삼평동 122	울산광역시 북구 삼평동 122	2017-04-27	기존 자연마을인 상원지 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408 4L	울산광역시 북구 신하중로 150(신하동)	2017-04-27	신하지구 중영을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50-1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36-1(호계동)	2017-04-27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8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울산광역시 복구 달곡1길 15	울산광역시 복구 무룡동 701-16 무룡동 701-17	2017. 4. 27.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_u.go.kr)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4. 27.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 2017 - 8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신영남부개발 대표 김일권, 장희선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 지구 B6블럭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붙임1】

1.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승인내역				
사업명칭	송정택지개발지구 B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6블럭				
사업주체	(주)신영남부개발 대표 김일권, 장희선				
사업주체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83, 상가동 127호 (송죽동,수원로알팰리스)				
대지면적	27,708.0472㎡				
건축면적	3,838.1180㎡				
연 면 적	64,785.7525㎡				
건폐율/용적률	13.85% / 169.89%				
층수/동수/세대수	지하 1층, 지상 16~25층 / 주 : 5개동, 부속 : 11개동 / 420세대				
사업규모	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A	310세대	84.9623㎡	25.2040㎡	110.1663㎡
	B	110세대	84.9523㎡	25.0941㎡	110.0464㎡
	계	420세대			
부대복리시설	구 분	합 계			
	경미실	20.0900㎡			
	관리사무실	255.0435㎡			
	조경시설	9,870.8800㎡ (35.62%)			
	주차장	517대			
	경로당	124.9455㎡			
	어린이집	186.8659㎡			
	주민공동시설	857.0946㎡			
	주민운동시설(외부)	313.7400㎡ (1개소)			
	어린이놀이터	754.1800㎡ (1개소)			
	근린생활시설	1,402.4858㎡			
	사 업 비	161,063,167천원			
사업기간	2017. 06. ~ 2019. 09.				

2.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7- 537호

울산광역시 복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 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 시, 해당
업체가 수거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민원 편의를 고려하여, 대행청구서 구비서류 중 “차량등록증”을
생략하고자 함.

(단,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시, 차량등록증
제출 의무)

2.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규정 추가
→ 당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시, 직접 서류 제출해야함.

3. 근거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전자정부법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13,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시행규칙 제4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붙임1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현행)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 가. 상 호 : (전화번호)
- 나. 소재지 :
- 다. 대표자 : 성 명 (인) 주소 :
- 라. 업 종:
- 마. 영업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구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행정동별 대상내역표 첨부

2. 사업개요 및 목적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계획

4.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운영계획

- 가. 인력 운용계획
- 나. 시설 확보사항
- 다. 장비 확보사항
 ※ 해당 업무 대행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임

5. 수집·운반·처리업 수지계산

구 분	수 입	지 출
자 산		
부 채		
자 본		

6. 첨부서류

- 가.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다. 재무제표 1부
- 라. 해당 업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 가. 상 호 : (전화번호)
 - 나. 소재지 :
 - 다. 대표자 : 성 명 (인) 주소 :
 - 라. 업 종:
 - 마. 영업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구역)
- ※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행정동별 대상내역표 첨부

2. 사업개요 및 목적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계획

4.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운영계획

- 가. 인력 운용계획
 - 나. 시설 확보사항
 - 다. 장비 확보사항
- ※ 해당 업무 대행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임

5. 수집·운반·처리업 수지계산

구 분	수 입	지 출
자 산		
부 채		
자 본		

6. 첨부서류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나. 재무제표 1부
- 다. 해당 업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1. 대행신청자

- 가. 상 호 : (전화번호)
- 나. 소재지 :
- 다. 대표자 : 성명 (인) 주소 :
- 라. 업 종 :
- 마. 영업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구역)
 - ※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업장 행정동별 대상내역표 첨부

2. 사업개요 및 목적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계획

4. 수집·운반·처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운영계획

- 가. 인력 운용계획
- 나. 시설 확보사항
- 다. 장비 확보사항
 - ※ 해당 업무 대행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임

5. 수집·운반·처리업 수치계산

구 분	수 입	지 출
자 산		
부 채		
자 본		

6. 첨부서류

-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나. 재무제표 1부
- 다. 해당 업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 명 (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7-541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 인·허가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안4조)

【신설】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 :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 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53,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산정금액으로 한다”를 “따르나 아래의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 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 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	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	-----		
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	착공사 행위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	-----		
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	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	-----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	-----		
다.	다.	-----		따르나 아래의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1.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 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신 설>	<신 설>			2. 지하수 개발·이용의 굴착 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